

95.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4. 11. 24.
- 나. 제안자 : 부 천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4. 11. 24.
- 라. 상정일자 : 1994. 12. 15. (제7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회계과장 원태희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매입 및 신축코자 함.
- 일반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신축부지 매입
- 심곡본1동 청사신축
- 심곡2동청사 신축부지 매입
- 사회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
- 원종6분회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•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은 어떠한 가격으로 구입하는지	• 건물이나 토지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입을 하고 있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95.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323
의 결 년 월 일	94. 12. 21 (제33회)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주 문

○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

2. 제안사유

○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매입 및 신축코자 함.

- 일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축부지 매입
- 심곡본1동 청사 신축
- 심곡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
- 사회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
- 원종6분회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

3. 관련법규 및 도면

○ “별 첨”

1995년 관리계회총괄표(7-1)

[illegible]

취 득 재 산 현 황

□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부지매입

-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 외 85필지
- 면 적 : 136,587.8m² (41,317평)
- 예 산 액 : 14,506,410천원
- 매입사유
 - 지역여건상 부천시는 자체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할 부지가 없어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함에 따라 중간 적환시설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청소차량의 노상주차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있으며,
 - 장기적으로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소각처리로 쓰레기를 감량화하여 매립지난과 수송난을 해소하고자 현대화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저 함.

□ 심곡본1동 청사 신축

- 위 치 :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665-14번지
- 부지면적 : 1,270.1m² (384평)
- 건축규모 : 지하1층 및 지상3층
- 건축연면적 : 1,342m² (406평)
- 예 산 액 : 851,851천원
- 취득사유
 - 현재 청사는 1971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, 기존건물 멸실 후 새로운 동청사를 신축하여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저 함.

□ 심곡2동 청사 부지매입
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5-3번지
- 소 유 자 : 부천단위농업협동조합 (창고사용)
- 부지면적 : 1,677m² (507평)
- 예 산 액 : 2,535,000천원

$$507\text{평} \times 5,000,000\text{천원} = 2,535,000\text{천원}$$

○ 매입사유

- 현재 동청사는 1975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동행정 및 민원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새로운 청사부지를 매입, 동청사와 문화 복지시설 병행 복합건물을 신축할 부지로 매입코저 함.

□ 사회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

○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10-3번지

○ 소 유 자 : 국(산림청)

○ 부지면적 : 1,630m²(493평)

○ 예 산 액 : 1,470,126천원

$$493\text{평} \times 2,982,000\text{원} = 1,470,126\text{천원}$$

○ 사업기간 : 1995. 1. 1. - 1995. 12. 31.

○ 매입사유

- 고강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공공기관 및 주민복지시설이 전혀없어, 다목적 사회복지센터 건립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원종6분회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

○ 건물신축

•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2-7번지

• 건물연면적 : 462m² (139평) 3층

• 구 조 : 벽돌슬라브

• 예 산 액 : 396,011천원

$$139\text{평} \times 2,849,000\text{원} = 396,011\text{천원}$$

• 사업기간 : 1995. 1. 1. - 1995. 12. 31.

○ 부지매입

•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2-7번지

• 면 적 : 384.7m² 채비지(나대지)

• 예 산 액 : 289,188천원

$$116\text{평} \times 2,493,000\text{원} = 289,188\text{천원}$$

• 신축사유

— 현재 사용중인 경로당이 낡은 슬레이트 건물로 지해요인이 상존 다목적 경로당을 건립 노
인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함이 판단됨.

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안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'94. 11. 28.

다. 상정일자 : '94. 12. 13.

라. 의결일자 : '94. 12. 13.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환경보호과장

나. 내 용

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
의 간소화 및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
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너무 많지 않은지?	○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 합한 과태료를 산출한 것임.